

신탁계약서 전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~7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“종류형”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2. 증권형(채권혼합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모자형 <p><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2. 증권형(채권혼합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모자형 6. 종류형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C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 <u>2. F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
<p>제8조(신탁금의 납입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</p>	<p>제8조(신탁금의 납입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</p>

<p>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<u>당해 수익증권</u>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<u>당해 수익증권좌수</u>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,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.</p>	<p>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</u>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,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.</p>
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, <u>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.</u></p>	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<u>수익증권의 종류별로</u>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, <u>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.</u>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②~④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<u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</u>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C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2. F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

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제18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제18조제1호 <u>및 제2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<u>및 제2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
<p>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 ①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.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 ④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~⑥(생략)</p>	<p>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 ①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<u>제삼자</u>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.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,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,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(현행과 같음) ④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<u>제삼자</u>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<u>법시행령</u>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~⑥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조(판매가격)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</p>	<p>제25조(판매가격)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</p>

<p>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수익증권</u>의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수익증권</u>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의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2영업일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<u>당해 수익증권</u>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~④(생략)</p>	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2영업일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1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단</p>	<p>제31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 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</u>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 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</u>]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</p>

<p>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날의 수익증권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<u>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</u>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5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</p> <p>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<u>당해 수익증권을</u> 매수 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35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</p> <p>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을</u> 매수 할 수 있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(수익자총회)</p> <p>①(생략) <신설></p> <p>②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.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, 관리하는 신탁업자 -----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④「상법」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----- 본다.</p> <p>⑤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</p>	<p>제38조(수익자총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만으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.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, 관리하는 신탁업자 -----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⑤「상법」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----- 본다.</p> <p>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</p>

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

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⑦집합투자업자(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⑧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

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

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이 항에서 "간주의결권행사"라 한다)한 것으로 본다.

1.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

2.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

3.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

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

⑧집합투자업자(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”은 “발행된 수익증권

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”은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”으로 하고,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”은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”로 한다.

⑨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-----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총좌수의 8분의 1 이상”으로 보고, “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”은 “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”으로 본다.

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-----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⑪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, 제6항,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“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”는 “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”로 본다.

제39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

①다음 각 호에 따른 신탁계약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39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

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

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

<p>1. <u>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</u></p> <p>2. <u>신탁업자의 변경(제44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</u></p> <p>3. <u>신탁계약기간의 변경</u></p> <p>4. <u>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. 다만,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,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5. <u>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</u></p> <p>6. <u>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다만,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7. <u>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</u></p> <p>8. <u>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</u></p> <p>9. <u>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u>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제>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5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p>	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5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p>

<p><신 설></p>	<p><u>2. F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</p>
<p>제42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 ②제1항에서 “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~8. (생략) <u>9.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</u> <u>10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u> <신 설></p>	<p>제42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 <u>다만,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.</u> ②제1항에서 “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~8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u>9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u> <u>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“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”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u> <u>1.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</u></p>
<p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신탁계약 중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	<p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<u>1.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</u></p>

<p>②~④(생략)</p>	<p><u>2. 신탁업자의 변경(제44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</u></p> <p><u>3. 신탁계약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</p> <p><u>4.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. 다만,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,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5.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</u></p> <p><u>6. 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다만,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7.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</u></p> <p><u>8.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</u></p> <p><u>9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u>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5.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5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p>
<p>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</p>	<p>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</p>

<p>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의를 거쳐야 한다. <u>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.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. 신탁계약서에 따른 투자목적,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
<p>제48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, 정정신고서, 투자설명서 및 <u>발행실적보고서</u>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, <u>투자설명서의 경우</u>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<p>2.(생략)</p> <p>⑤~⑩(생략)</p>	<p>제48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, 정정신고서, 투자설명서, <u>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</u>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, 투자설명서 및 <u>간이투자설명서</u>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<u>전화·전신·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</u>으로 표시한 경우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⑤~⑩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